

왜 지금 아동인가

: 아동과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유

- 민은경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 김정은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에 표상된 돌봄의 문제적 양상을
활용한 다문화 아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
— 결혼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 조연정 2000년대 한국시의 ‘여자-아이’들
- 김젬마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
— 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민은경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목차

- 1 서론
- 2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 3 ‘진짜 나는 누구인가?’
 - 3.1 이름을 가질 권리
 - 3.2 국적을 취득할 권리
 - 3.3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 4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
- 5 나가며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쓴 혁신적인 문건이다. 본고는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협약을 꼼꼼하게 읽을 것을 제안한다. 해외입양을 논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약은 입양 절차에 대한 규약을 명시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이지만, 아동의 권리를 폭넓게 정의한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이 협약 제7조와 제8조가 천명하는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right to preserve his or her own identity)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는 아동-부모-국가의 삼자 간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국가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는 아동의 ‘생명에 관한 교유의 권리’ 외에도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정체성’이란 국적, 이름, 가족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해외입양인 사례는 해외로 보내진 한국 출신 입양아동들이 이름, 국적, 가족 관계를 꾸준히 박탈당하였음을 증언한다. 디앤 보르웨이 립(강옥진), 아담 크랩서(신성혁), 카라 보스(강미숙)의 이야기는 해외입양 아동들이 특히 정체성의 취약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정체성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이라면, 본고는 ‘애도할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보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동의 애도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 해외입양 아동의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다.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는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의 최대 피해자인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상실한 친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혼모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의 역사 속에 입양된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입양한 친모의 애도할 권리 또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문핵심어: 해외입양, 한국, 아동권리선언(1924, 1959),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1993), 아동, 권리, 정체성, 이름, 국적, 가족,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문제를 말할 때 해외입양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¹ 6·25 전쟁 이후 고아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시작된 한국의 해외입양은 그 규모에 있어서 충격적이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는 약 16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해외 자료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약 20만 명의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² 부실한 관리와 기록 속에 시작된 해외입양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계 해외입양인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해외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외입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재고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2009년에 중앙입양정보원이 세워졌고, 이는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입양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입양정보공개제도 등 새로운 법적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도 전체 입양아동 704명 중 317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고 이들은 모두 미혼모 아동이었다. 손승영이 지적하듯, “입양아동이 전쟁고아에서 미혼모 자녀들로 대체되었을 뿐”, 해외입양은 지속되고 있다.³

-
- 1 석광현은 해외입양을 국외입양(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입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부모에 의한 입양과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포함), 국가간 입양(intercountry adoption, 아동이 본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입양되는 경우)으로 구분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해외 입양사례는 국외입양, 국제입양, 국가간 입양 모두에 해당된다. 석광현,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 제15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425쪽 참조.
 - 2 해외 통계 관련해서는 Eun Kyung Min, “The Daughter’s Exchange in Jane Jeo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Social Text* 94 (2008), pp.115-116 참조.
 - 3 손승영,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담론21』 제23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0, 164쪽.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논의에서 늘 언급되는 사실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3년에 유엔(United Nations, UN) 정기회의에서 비준된 이 국제협약은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해외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과 부합될 때, 국제법이 인정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fundamental rights)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국가는 아동이 원가족의 돌봄(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원국가(State of origin)에서 아동을 돌볼 가족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해외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헤이그입양협약에 오랫동안 한국정부가 서명하지 못한 이유는 이 협약이 해외입양을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헤이그입양협약에 의하면 해외입양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준하여 아동은 가능한 한 “출생가정 또는 확대가족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신국에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 한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국제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⁴ 헤이그입양협약은 아동권리협약 제21조 (나)항의 정신에 충실한 협약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해외입양은 아동이 출신국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울 경우 고려될 수 있는 돌봄의 대체수단(may be considered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이지 최선책은 아닌 것이다.⁵ 반면 한국의 입양정책은 오랫동안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에 최적화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54년의 「고아양자특례법」, 1961년의 「고아입양특례법」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해외입양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동들을 해외에 보냄으로써 사회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1976년의 「입양특례법」은 국내입

4 김준,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12.11, 25-26쪽.

5 「헤이그입양협약」, 제21조.

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치였지만, 1980년대에도 해외입양 사례는 계속 늘어 1985년에는 8,837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⁶ 아동권리협약의 정션에 입각한 최초의 해외입양 관련 국내법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인데, 이는 제인 정 트렌카 등,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한국에 돌아온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다. 2013년에 비로소 한국 정부는 헤이그입양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이를 2년 안에 비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한편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입양인들의 권리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본고의 목표는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정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법률적,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대신, 본고는 이와 같은 작업에 선행되어야 할 이론적 과제를 수행한다. 즉,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며,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문을 꼼꼼히 살펴본다. 헤이그입양협약이 아닌 아동권리협약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본고의 관심이 해외입양절차가 아닌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에 있고, 아동권리협약이 헤이그입양협약의 개념적 근거를 이루는 정초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음 질문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주장을 분석할 것이다. 아동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권리’의 주체인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무엇인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보내진 해외입양인 사례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의 의미와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2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국제적 합의는 아동권리협약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지만, 1924년,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그야말로 ‘선언’에 그친 경우다. 세계1차대전의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6 손승영, 앞의 글, 164쪽.

Geneva)으로도 알려진 1924년의 유엔 선언은 총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언으로, 배고픈 아동에게는 음식, 아픈 아동에게는 치료,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자선과 구호의 메시지를 주로 담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⁷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인권을 기술하고자 했던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역시 구속력 없는 결의(non-binding resolution)였으며, 아동의 권리주장보다는 아동에 대한 보호(protection)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반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192개국]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조약”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권리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보아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종합적 인권문서이다”.⁹ 총 5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상당히 길고 복잡한 이 협약 중 본고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제6, 7, 8, 9조에 담긴 내용, 특히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떠나가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인 철학적 전제가 명시된 부분이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을 먼저 살펴보자.¹⁰

7 Dominique Marshall, “The Construction of Children as an O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clara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hild Welfare Committee of League of Nations, 1900-1924.”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2 (1999), 133쪽.

8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UNICEF Korea. <https://www.unicef.or.kr/news/crc-publications.asp?idx=513>.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3개 조항을 제외하였다. 책자에 따르면 이 3개 유보조항은 제9조 제3항, 아동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제21조 가장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양허가제도, 제40조 나-(5)항, 범법 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상소권 보장제도를 다룬다.

9 윤혜경,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본 아동, 부모, 국가간의 3자 관계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2호,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997, 52-53쪽.

10 영문 원문과 한글 번역은 다음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trtySeq=188&vSct=%EC%95%84%EB%8F%99%EA%B6%8C%EB%A6%AC&mode=4&chrClsCd=010202>.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¹¹

위 네 조항의 문법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문장이 ‘당사국은’(States

11 본고에서 자세히 분석하는 4개 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Parties shall)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협약의 문법적 주어가 아동이 아닌 ‘당사국’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All human beings, Everyone, All, No one), 모두가(Everyone, All)를 주어로 한다.¹² 세계인권선언에 토대를 둔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역시 아동을 주어로 한다. 이 선언의 세 번째 원칙(principle)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The child shall be entitled from his birth to a name and a nationality).¹³ 반면, 아동권리협약의 문법적 주체는 ‘당사국’으로, “The child shall”으로 시작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제7조 제1항과 같은 조항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권리선언이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존하고 지켜줄 당사자로 ‘당사국’, 즉 협약에 동참한 국가와 국가의 기관(제3조에서 명시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을 호명하는 데 집중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문법은 다음 딜레마를 노출하고 있다.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도 주장할 수 없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행사하지도 못하는 만큼 그 권리는 다른 주체가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하는데,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을 보호할 주체는 국가다. 왜 부모가 아닌 국가일까? 아동권리협약에서 부모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협약문 제18조를 살펴보자. 협약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이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부모는 아동에 대한 권

12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13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필자 번역.

<http://www.cirp.org/library/ethics/UN-declaration/>

리가 아닌 ‘책임’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못박는다. 더욱이, 제19조에 의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동이 부모·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에 이 모든 종류의 “혹사나 착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부모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이미 언급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survival and development)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이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통제되는 면이 있지만, 아동을 돌보는 일이 단순히 부모의 개인적 책임이 아닌,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은 다분히 정치적 텍스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부모-국가의 삼자 간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국가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내에서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정치화되고 아동에 대한 책임 역시 정치화된다.

그렇다면 아동-부모-국가의 삼각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아동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며, 이는 부모와 국가의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협약문의 제6, 7, 8 조문은 아동의 성명권(right to a name), 국적취득권(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그리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를 규정한다. 협약문 제6조가 모든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 to life)를 선언한다면, 제7조는 아동의 이러한 생명권에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권’이 포함된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모든 아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협약문에 의하면, 아동이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지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소로부터 아동의 ‘정체성’(identity)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존할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를 갖는다.¹⁴ 법제처에서는 제8조의 ‘identity’를 ‘신분’으로 옮기고 있지만, 제8조는 아동의 법적 신분만을 논하고 있지 않고, ‘identity’에 국적, 이름, 가족관계(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가 ‘포함’(including)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법제처의 번역은 특히 아쉽다. 제8조 제1항의 요지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정체성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국적, 성명과 가족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함에 있어 아동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번역문은 아동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identity’를 ‘법적 신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Identity’ 뒤에 구두점을 찍고 있는 영문 문장은 국문 문장보다 훨씬 열려 있다.¹⁵ 따라서, 정체성을 법적 신분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여기서 ‘identity’는 아동권리협약의 전문(前文)에서 말하는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란 개념은 사뭇 낯설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정체성을 가질 권리’와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법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권리란 우리가 타인에게 청구(claim) 또는 양도(transfer) 가능한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정체성이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의 해외입양 역사는 아동의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그리고 부모를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여러 사례를 포함한다. 다음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3 ‘진짜 나는 누구인가?’

14 프란시스 올슨(Frances Olsen)에 의하면 아동권리협약 제8조는 아르헨티나의 군부통치 기간이었던 ‘더러운 전쟁’(1976-1983) 중 ‘실종된’ 아동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정치테러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하거나 훑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본래 작성되었다. Frances Olsen, “Children’s Rights: Some Feminist Approach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the Family* 6 (1992), p.216.

15 각주 11 참조.

3.1 이름을 가질 권리

디앤 보르쉐이 림(Deann Borshay Liem, 림은 배우자의 성이다)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2000)와 〈차정희와 관련하여〉(*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2010) 등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아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양부모의 홈비디오 영상으로 시작하는 「일인칭 복수」는 8살 ‘차정희’가 197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디앤 보르쉐이’라는 새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고 미국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미국인 디앤으로서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되는 듯했던 차정희는 그러나 입양가족과 떨어져 대학을 다니면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디앤은 자신의 한국 이름이 차정희가 아니라 강옥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어 디앤의 부모도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밝혀진다.¹⁶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 아동들의 딱한 처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자선단체들이 앞다투어 후원 방법을 홍보하였다. 자선단체를 통해 고아 ‘차정희’를 후원하기로 하고 2년 동안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은 보르쉐이 부모는(물론 그들이 받은 영어편지는 차정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써서 부친 것이었다) 차정희가 무척 감사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들과 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후, 차정희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차정희의 아버지가 고아원에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5,60년대 한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부모들이 아이를 잠시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정희의 아버지 역시 그런 예였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고아원 측에서는 사실을 털어놓는 대신 비슷한 나이의 강옥진을 차정희인양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놀라운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강옥진 또한 고아가 아니었으며, 고아원 측에서 가난에 시달리던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넷째 딸 강옥진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한 것이다. 고아가 아닌 고아를 이런 수법으로 ‘수출’한 배경에

16 Deann Borshay Liem, *First Personal Plural*, Center for Independent Documentary, 2000;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New Day Films, 2010.

는 고아원의 재정적 지원 확보라는 동기가 있었다. 평생을 위조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림은 자신이 존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자신에게 입양될 권리도 미국인이 될 권리도 없다는 생각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이 해외입양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아동에게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 그 이름은 누가 정하고 누가 아동에게 주는 것인가? 아동의 이름이 스스로 부여하는 이름이 아니라 남이 붙여주는 이름인 만큼, 아동의 이름을 가질 권리는 곧 아동의 이름을 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림의 경우, 명명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아닌 고아원이었으며, 그 와중에 림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이름은 묻혔다. 림의 다큐멘터리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름을 가질 권리’가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짓밟힌 사실을 들춰내고 있다. 고아가 아닌 아이들이 고아로 둔갑하여 해외로 입양된 역사를 고발하는 <일인칭 복수>는 한국전쟁 이후 아동의 이름과 정체성을 위조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2 국적을 취득할 권리

디앤 보르웨이 림처럼 한국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복수의 이름, 복수의 부모를 포용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입양제도의 허점 때문에 해외로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자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기구하기 짝이 없는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본명 신성혁)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다.¹⁷ 1975년생 신성혁씨는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두 살 위인 누나와 함께 미국에 입양되었다. 신씨와 그의 누나를 학대한 첫 번째 양부모는 5년 뒤 다른 주로 떠나면서 아이들을 사회복지기관에 맡겨버렸다. 이후

17 아담 크랩서를 신성혁으로 호명하는 것은 그의 법적 이름을 따르기 위함이지만, 이 이름을 씌으로써 미국 정부의 조치에 동조하게 되는 측면이 문제로 남는다. 그를 학대했던 크랩서 부부의 이름을 쓰는 것 역시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신씨와 그의 누나는 헤어져 각기 다른 가정에 보내졌다. 이때 신씨를 위탁받은 부부가 나중에 이혼하면서 신씨는 다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 크랩서 부부는 신씨가 만난 세 번째 미국 부모였다. 신씨에 의하면 이들은 ‘사이코패스’였다.¹⁸ 이들은 3명의 친자녀 외에도 멕시코, 필리핀, 흑인, 한국 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하여 키웠는데 그 이유는 지원금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이들의 본모습은 결국 아동의 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92년에 강간 3건, 강간 미수 1건, 학대 14건, 폭행 2건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재판 후에 16세의 신씨를 거리에 버렸다. 노숙자 신씨가 된 신씨는 크랩서씨네 집에 두고 온 성경책을 가지러 갔다가 양부모가 그를 주택침입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25개월 징역을 살게 되었다.

2011년, 27년 만에 누나를 만나게 된 신씨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누나는 신씨를 걱정하며 이민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때 범죄 이력도 같이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그 이력 때문에 신씨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만 것이다. 2016년에 신씨는 37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인으로서의 법적 신분을 모두 박탈당한 상태로, 부인과 자녀를 미국에 남겨두고 오로지 ‘신성혁’이란 이름만을 가진 채 한국에 돌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문제는 해외입양아동이 받은 IR-4 비자에 있었다. 입양특례법 이전에는 민간기관이 해외입양을 주도하였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IR-4 비자 발급이 필수적이었다. 이 비자는 미국에 이주하여 미국인 양부모의 보호하에 양육될 해외 고아를 위한 것으로, 양부모에게는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부여했다. 양부모가 추후에 아동을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을 때 입양과정이 최종 종결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어느 양부모도 입양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던 신성혁씨는 끝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¹⁹ 나중에 밝혀

18 전홍기혜, 「나는 1억 원짜리 ‘서류 고아’였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 ①」, 『프레스시안』, 2017.10.3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3847?no=173847#0DKU>.

19 이 법률상의 허점으로 인해 19,000여 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이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

졌지만, 디앤 림 보르쉐이와 마찬가지로 신성혁씨 역시 가짜 ‘서류 고아’였다. 왼쪽 다리가 마비된 신씨의 어머니가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신씨와 누나를 보육원에 맡겼는데 보육원에서 해외입양을 진행한 것이다.²⁰ 2016년 11월에 신성혁씨는 국내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37년 만에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하였다.²¹ 그리고 2019년에 신씨는 정부와 홀트아동복지재단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의 미국인 양부모들도 무책임했지만, 고아가 아닌 그를 위법적으로 해외입양 보내기 위해 호적을 위조한 홀트아동복지회, 그리고 홀트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서류조작을 묵인, 방조하고 입양 보낸 아동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신성혁씨는 본인이 태어난 국가에 돌아왔지만 국제미아가 되어 귀국했다. 그는 3살 이후 줄곧 사용해온 아담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법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는 미국에서 지워진 존재다. 그는 말한다. “매일매일 다른 이름을 쓰는 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이다. 아담은 내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도 가까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에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아담 라이트, 아담 코먼(위탁 가정에 있었을 때 이름), 아담 크랩서, 신송혁(홀트가 잘못 기재한 기아호적 상의 이름. 아담은 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이 이름이 본인의 한국 이름인 줄 알고 있었다), 신성혁… 내가 가졌던 이름들이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²² 신성혁씨의 이야기는 아동의 국적취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이 국가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유령처럼 떠도는 존재,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씨는 아동권리협약 제8조에 명시된 ‘국적,

하고 살고 있다. 언제든지 법의 그물망에 걸리면 추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 권광순, 「美입양 네살배기, 마흔하나에 ‘엄마’ 품으로」, 『조선일보』, 2016.11.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3/2016112300197.html.

21 그를 취재한 〈MBC 휴먼다큐—나의 이름은 신성혁〉은 2017 아시아태평양야방송연맹(ABU)상을 받기도 했다.

22 전홍기혜, 「‘장관 입양인 영광… 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②」, 『프레시안』, 2017.1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4302#ODKU>.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박탈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신성혁씨의 미국 양부모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신씨가 입은 피해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당사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아동권리협약의 성과 중 하나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논하고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001년에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과시키면서 무국적 해외입양인들을 구제하고자 했으나 법이 공포된 시점(2001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었던 '아동'에게만 법을 적용하였다. 신성혁씨와 같은 성인은 법의 허점(loop-hole)에 고스란히 노출돼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여전히 비준을 미루고 있다.

3.3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디앤 보르웨이 림과 신성혁의 사례는 한국의 해외입양이 아동권리협약 제9조가 명시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보다는 입양기관의 이익에 충실한 방식으로 전개된 사례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입양기관이 고아호적을 위조하여 친부모가 엄연히 존재하는 아이들까지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은 '아동이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는 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²³ 입양기관이 설령 친부모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 아동을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도 해외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determine ...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양육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23 법제처는 'against their will'을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로 번역하지만 이는 오역이다.

basis)를 보장하며, 이러한 개인적 관계 및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협약문 제9조는 입양아동보다는 이혼부모의 아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입양인들은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최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간에는 제8조가 명시하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자리한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제9조가 명시하는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국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 한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할 때 협약문 제9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제외하고 비준하였다. 한국사회가 입양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양아동보다는 친부모의 사회적 정체성을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지만²⁴, 친생부모가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정하여²⁵, 부모의 권리가 입양인의 알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구조다.²⁶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카라 보스(Kara Bos, 한국명 강미숙)의 사연을 들 수 있다. 카라 보스는 1983년 충청북도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두 살 때 발견되었다. 10개월 후 미국 미시간에 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결혼과 출산이었다. 남편과 네덜란드에 이주해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보스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입양을 친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친모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 그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친모 찾기에 나섰다. 단서는 온라인에서 찾았다. 온라인에 포스팅

24 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입양정보는 크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양 배경에 대한 정보(입양 다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입양 사유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출생장소), 입양기관 관련 정보 등이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25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26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요약문에 의하면, “입양정보 공개제도는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정보에 접근할 확률은 아직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김준, 앞의 책.

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매칭이 된 20대 한국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보스는 이 단서를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친부를 찾았지만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그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야 했다. 결국 소송에 이겼지만, 끝내 친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 경호원을 대동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난 아버지는 얼굴을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완벽하게 가린 모습이었고 대화를 10분 이상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²⁷

카라 보스는 BBC 다큐멘터리에서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조계의 부정의(injustice)를 꼬집으면서, 입양이 아동에게 물론 많은 것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앗아간다고 말한다. “An adoptee can also mourn, and has to mourn, that loss”라는 말로 끝나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 어떠한 보상과 선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실을 지울 수 없다고 선언한다. “입양인은 애도할 수 있고 애도해야만 한다”는 보스의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입양인에게는 상실을 애도할 권리가 있을까? 입양인이 애도할 수 있는 상실이란 무엇일까? 보스의 선언은 입양아동이 겪은 부모의 상실을 본인이 상실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상실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애도하는 대상을 입양인이 영원히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그를 끝없는 애도(endless mourning)에 감금해버리는, 입양인을 두 번 버리고 거부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마음을 열고 한국사회에 접근해도 한국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닫고 네덜란드에 있는 ‘집’(home)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보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권리 앞에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4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

27 「카라 보스 “엄마 찾는 아이에 문 닫은 韓, 내 마음도 닫는다」, 『동아일보』, 2020.7.1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716/102005618/1>. BBC 뉴스는 2020년 7월16일 카라 보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5Q6N3lvRQ>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해외입양은 과연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가? 헤이그입양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상호보완적인가 아니면 서로 상충하는가? 출생가정 또는 출신국에서의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외입양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두에 명시하고 있는 헤이그입양협약은 입양을 통해 아동이 정체성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듯하다.²⁸ 그러나 해외입양을 보내는 국가와 해외입양을 받는 국가 간의 법적 조율, 그리고 불법적인 해외입양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헤이그입양협약은 해외입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아동의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각국의 입양제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기술되어 있다. 헤이그입양협약 제16조는 아동의 출생국에서 아동의 친모와 친부의 정체성(the identity of the mother and the father)을 노출시키는 것이 불법일 경우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제26조는 해외입양으로 인해 아동이 그의 친모와 친부와 맺고 있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가 소멸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한다. 아동이 출신국에서 입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국에서의 입양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새로운 “영구적 가족”(permanent family)을 제공하는 이점(advantage)을 선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⁹ 이 새로운 “영구적 가족”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헤이그입양협약이다.

그러나 디앤 보르웨이 림, 신성혁, 그리고 카라 보스의 사례는 해외입양을 통해 아동이 새로운 영구적 가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사실과 함께, 새 가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특히 친 부모를 알 권리가 박탈되었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

28 “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r origin”.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29 “Recognising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offer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family to a child for whom a suitable family cannot be found in his or her State of origin”. 위의 글.

고한다. 디앤 보르웨이 림의 경우 친모와 양부모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본인이 가진 ‘복수의 정체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라 보스는 친부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화를 거부하는 친부와는 만남은 아픔만 남겼다. 보스가 친부와 가진 짧은 만남은 아동권리협약 제 9조가 명시하는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기는커녕 친부가 그 권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신성혁의 경우, 미국 입양제도의 허점 때문에 해외에 입양이 된 아동이 새로운 국적과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없는 유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끔찍한 교훈을 남긴다.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작성된 헤이그입양협약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해외법의 허점 때문에 희생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외입양의 어려움을 재차 상기시킨다. 인종과 문화가 전혀 다른 양부모와 살게 될 가능성이 큰 한국의 해외입양 아동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바, 입양된 아동의 시민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조치 외에도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 중 하나는 해외입양이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폭넓게 해석할 경우, 해외입양에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며, 해외입양인들이 주장하는 정체성을 애도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아동권리협약이 안고 있는 한계 또한 뚜렷하다. 특히, 협약의 근간이 되는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 내에 다수의 균열이 포착된다. 아동권리협약이 보호하는 아동의 권리를 크게 복지권(provision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세 종류로 나눈 게리슨 랜즈다운(Gerison Lansdown)의 체계에 의하면 아동이 본인의 이름과 국적을 갖고 부모를 알 권리는 아동의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에 해당된다.³⁰ 랜즈다운은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참여권, 즉 아동이

30 랜즈다운에 의하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제공권(provision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을 보장한다. 국가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교육과 건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아동권리선언 등의 문서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³¹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복지권과 보호권은 아동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동보호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을 자율적 인격체이자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여라는 것이다.³² 바로 여기서 중요한 균열이 포착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한편으로는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주체성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독립적 주체로 이해한다.³³ 위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사례는 이 균열의 극적인 예로, “아동과 부모의 이익이나 입장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³⁴ 있고, 국가의 이익 또한 아동과 부모의 이익과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앤 브로웨이 림, 신성혁, 카라 보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아동의 참여권이 어떻게 침해당할 수 있는지 고발하고 증언한다.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동권리협약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또 다른 균열은 바로 정체성이란 개념과 관련 있다. 정체성(identity)은 아동권리협약 이전에 쓰이지 않은 단어다.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은 정체성(identity) 대신 인격체(personality)라는 용어를 택하였고, 권리 대신

강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법적, 정치적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Lansdown, “Children’s Rights,” *Children’s Childhoods: Observed and Experienced*, ed. Berry Mayall, London: Falmer Press, 1994, p.36.

31 Lansdown, 앞의 글.

32 윤혜경, 앞의 글, 50쪽.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주요 조문으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제13조(“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제14조(“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존중”), 제15조(“아동의 경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 등이 있다.

33 David Archard, “Children’s Rights,” ed., Thomas Cushman, *Handbook of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2012, p.329.

34 윤혜경, 앞의 글, 55쪽.

의무, 책임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³⁵을 강조하는 아동권리선언의 여섯 번째 원칙(principle)은 다음과 같다.

인격체로서의 충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아동은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돌봄과 책임하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도덕적, 물질적 안정이 담보되는, 애정어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유아는 친모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와 공공기관은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특별한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³⁶

여기서 인격체(personality)로서의 아동은 사랑(love), 이해(understanding), 돌봄(care)의 대상이 되는 취약한 존재로 묘사된다.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을 “특별한 돌봄”(special care)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아동에 대한 어른과 사회의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duty)를 강조한다. 반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필요’(need)를 ‘권리’로 다시 쓰면서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로 국가를 특정한다. 아동의 돌봄을 사적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아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성과다. 동시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정체성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킨다. 그러나 법제처의 국문 번역이 보여주듯, 정체성이란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법적 신분’으로 축소될 여지를 남긴다. 본고

35 Preambl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cirp.org/library/ethics/UN-declaration/>

36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needs love and understanding. He shall, wherever possible, grow up in the care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his parents, and in any case, in an atmosphere of affection and of moral and material security; a child of tender years shall not,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parated from his mother. Society and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have the duty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children without a family.” Principle 6.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cirp.org/library/ethics/UN-declaration/> 필자 번역.

검토한 해외입양인의 사례는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이 충돌할 수 있듯, 아동의 법적 정체성과 사회적, 심리적 정체성 간에는 큰 간극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신분은 단일하여도, 해외입양인은 복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정의하는 아동의 권리가 균질하지 않고 상호충돌한다는 점, 협약이 명시하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 외에도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아동의 ‘권리’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법적 신분에 대한 권리로 좁게 해석하지 않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넓게 이해할 경우 더욱 문제적이다. 여기서 칸트주의자 오노라 오닐(Onora O’Neill)이 제기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비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오닐은 아동의 경우 ‘권리 수사법’(rhetoric of rights)보다는 ‘의무 수사법’(rhetoric of obligations)을 쓰는 것이 적절하며, 아동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타자(부모, 대리인)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령,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 애착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동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동에 대해 갖는 사랑의 의무는, 오닐의 용어를 따르자면 ‘불완전한 의무’(imperfect obligation)이며 법의 차원을 넘어 윤리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의무다.³⁷ ‘불완전’하다는 말은 권리와 완벽하게 대응이 안 된다는 의미로, 다 규정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진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는 권리에 가까운가 아니면 의무에 가까운가? 법의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윤리의 영역에 해당되는가? 오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마이클 프리먼은 오닐처럼 의무를 강조할 경우 아동권리협약을 부정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참여권이 묵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³⁸ 그러나 권리와 의무를 단순히 대립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 또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37 Onora O’Neill,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Lives,” *Ethics* 98.3, 1988, p.463.

38 Michael Freeman, “Children’s Rights as Human Rights: Reading the UNCRC”, ed., Jens Qvortrup, William A. Corsaro and Michael-Sebastian Honig, *The Palgrave Handbook of Childhood Studies*,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9, p.380.

해외입양의 역사가 요청하는 정체성에 대한 사유가 법과 권리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듯,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아동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카라 보스가 말한 ‘애도할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보자. 디앤 보르웨이 림, 이상혁, 카라 보스가 경험한 상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상실이지만, 그 상실이 정체성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바로 그 취약성 때문에 가능했던 상실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는 애도할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스가 말하는 애도할 권리는 일차적으로 친부모를 알 법적 권리이지만, 그 권리로 다 포섭할 수 없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애도할 권리는 타인으로부터 쟁취할 수 있는 것, 혹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불완전한 의무’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스가 말하는 애도할 권리는 슬픔이라는 정념에 대한 권리로, 설령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도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애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애도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당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슬픔이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의 뿌리에 맞닿아 있기(reaching to the roots of personal identity) 때문이다.³⁹

보스의 애도할 권리는 케네스 도카(Kenneth Doka)의 ‘박탈당한 슬픔’(disenfranchised grief)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도카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상실 중에서 ‘인정되지 않는’(unacknowledged) 슬픔의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슬퍼할 권리, 애도할 권리의 박탈이란 형태로 경험된다.⁴⁰ 슬픔을 권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슬픔의 ‘대화적’ 층위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grief is dialogic).⁴¹ 슬픔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애도는 증언과 나눔, 인정을 필요로 한다. 애도를 허락한다는 것은 슬픔을 감정으로서 긍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확인

39 Harvey Peskin, “Who Has the Right to Mourn?: Relational Deference and the Ranking of Grief,” *Psychoanalytic Dialogues* 29, 2019, p.478.

40 Kenneth Doka,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Lanham, MD: Lexington, 1989.

41 Peskin, *ibid.*, p.479.

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애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 감정의 원인인 상실과 우리의 관계성을 같이 부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애도할 권리라는 말은 우리의 상실에 사회정치적 맥락이 있을 수 있고 슬픔과 상실이 그저 개인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애도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애도에도 계급과 지위가 발생한다고 페스킨은 지적한 바 있다. 피를 나눈 친가족의 슬픔이 친구의 슬픔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적 관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⁴² 물론 애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애도가 끝나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애도할 권리는 애도의 시작이지 애도의 목적 또는 끝이 아니다. 그러나 애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체성도, 관계성도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에서 애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주체는 입양아동뿐만이 아니다. 친모를 상실한 입양인들의 애도와 같구를 인정함과 동시에, 친모 역시 친모로서의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아동을 애도할 권리를 빼앗긴 것은 아닌지 사회와 국가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해외입양의 역사는 입양아동의 역사인 동시에, 정체성을 잃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수많은 친모의 역사이다. 이들이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를 묻는 작업이 입양인들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아동의 취약성이 친모의 취약성의 귀결이며, 입양아동의 박탈당한 애도할 권리가 결국 친모의 박탈당한 애도할 권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아동의 권리에 담긴 보편적 의미를 더욱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폭력, 애도, 정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상실의 느낌을 간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듯 그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느낌만 갖게 될까? 아니면 인간적 취약성의 느낌으로, 서로의 물리적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⁴³ 버틀러가 말하는 ‘집단적 책임감’은 무엇보다 서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리적 만남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되려면 취약한 존재로 감지되고 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취약성이 인정되지 않고 취약

42 Peskin, 앞의 글, pp.480-481.

43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30쪽.

성이 ‘인정불가능’한 것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⁴⁴다. 따라서, 취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물리적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으로 되돌아가”(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e physical lives of one another)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집단적 책임감이다. 해외에 입양되어 고국을 떠난 한국의 입양인들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집단적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5 나가며

해외입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체성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성이란 사회적인 측면 외에도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심리적, 내면적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본고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정체성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을 꼽았다. 동시에, 애도할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보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때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는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에서 최대 피해자인 아동과 친모 양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동의 애도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 해외입양 아동의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같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친모의 애도할 권리를 인정함은 친모의 상실을 공론화하고 공적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입양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입양한 친모의 애도할 권리를 부정해 온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는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반세기 이상 누적된 젠더 부정의”⁴⁶의 한 예로, 아동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돌봄과 모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 없이 입양행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만을 강화하는 것

44 위의 책, 77쪽.

45 위의 책, 60쪽.

46 전희경,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 책, 2020, 36-37쪽.

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입양특례법의 법적 조치가 아직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강화한 후 해외입양이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미혼모들의 절대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입양을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가 되면서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⁴⁷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관리가 훨씬 엄격해지자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여 아기를 유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법원이 요구하는 출생신고서에 친모와 친부 모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지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친모 역시 정보공개를 꺼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 “형식적 입양요건을 보완하는 규정”⁴⁸을 두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가족의 최선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미혼모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의 역사는 아동의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한국사회의 부정의한 구조”⁴⁹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친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구축”⁵⁰하는 것 외에도, 돌봄의 의무가 모성에 집중되는 형상을 해소하고,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며,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여성을 “컨트롤하고 제약”(control and confine)⁵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는다. 해외입양의 역사를 반추하는 작업은 “친생모의 모성이

47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

48 윤진숙,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법학연구』 제24권 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74쪽.

49 전희경, 앞의 글, 37쪽,

50 김재민, 앞의 글, 312쪽.

51 Frances Olsen, “Children’s Rights: Some Feminist Approach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the Family* 6 (1992), p.199.

갖는 크고 편재되고 때로 과도한 책임에 대한 재조명⁵²과 더불어 모성의 “젠더 화 된 고통”⁵³, 부재한 친부에 대한 역사화를 요청한다. 지난 이십여 년간 입양특례법 개정, 헤이그입양협약 서명 등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해결할 난제가 많다. 아동과 친가족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 내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는 방법, 아동의 권리와 친모, 친부의 권리를 같이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집단적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준,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12.1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91. 12. 20.] [다자조약, 1072호, 1991. 12. 23.]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trtySeq=188&vSct=%EC%95%84%EB%8F%99%EA%B6%8C%EB%A6%AC&mode=4&chrClsCd=010202>

_____, 「입양특례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8호, 2020. 12. 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85%EC%96%91%ED%8A%B9%EB%A1%80%EB%B2%95#undefined>

_____, 「입양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7

52 신필식, 「권리의 언어 사이로 빠져나간 정체성, 애도 그리고 아이들」,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토론문, 2021.4.24.

53 신필식, 「한국 해외입양 아동과 친생모의 이산 과정, 그리고 젠더화 된 고통: 다섯 입양인에 관한 수기와 회고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101-147쪽.

호, 2019. 7. 16.,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85%EC%96%91%ED%8A%B9%EB%A1%80%EB%B2%95#undefined>

보건복지부. 「2019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98604161587_20200828174241.xlsx&rs=/upload/viewer/result/202107/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oncluded 29 May 1993)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ed 10 December 1948)

<https://www.jus.uio.no/lm/en/pdf/un.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1948.portrait.letter.pdf>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20 November 1959)

<http://www.cirp.org/library/ethics/UN-declaration/>

단행본

전희경,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 책, 2020, 29-80쪽.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46-86쪽.

David Archard, “Children’s Rights,” *Handbook of Human Rights*, ed., Thomas Cushman, New York: Routledge, 2012, pp.324-332.

Gerison Lansdown, “Children’s Rights,” *Children’s Childhoods: Observed and Experienced*, ed., Berry Mayall, London: Falmer Press, 1994, pp.33-44.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2004, pp.19-151.

Kenneth Doka,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Lanham, MD, Lexington, 1989.

Michael Freeman, “Children’s Rights as Human Rights: Reading the UNCRC,” ed., Jens Qvortrup, William A. Corsaro and Michael-Sebastian Honig, *The Palgrave Handbook of Childhood Studies*,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9, pp.377-393.

논문

김재민,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제35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282-318쪽.

석광현,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 제15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421-492쪽.

손승영,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담론21』 제23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0, 161-191쪽.

신필식, 「한국 해외입양 아동과 친생모의 이산 과정, 그리고 젠더화 된 고통: 다섯 입양인에 관한 수기와 회고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101-147쪽.

윤진숙,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법학 연구』 제24권 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59-184쪽.

윤혜경,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본 아동, 부모, 국가간의 3자 관계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2호, 한국아동가독복지학회, 1997, 49-60쪽.

Dominique Marshall, “The Construction of Children as an O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clara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hild Welfare Committee of League of Nations, 1900-1924,”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2 (1999), pp.103-148.

Eun Kyung Min, “The Daughter’s Exchange in Jane Jeo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Social Text* 94 (2008), pp.115-133.

Frances Olsen, “Children’s Rights: Some Feminist Approach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the Family* 6 (1992), pp.192-220.

Harvey Peskin, “Who Has the Right to Mourn?: Relational Deference and the Ranking of Grief,” *Psychoanalytic Dialogues* 29, 2019, pp.477-492.

Onora O’Neill,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Lives,” *Ethics* 98.3, 1988, pp.445-463.

기타

권광순, 「美입양 네설배기, 마흔하나에 ‘엄마’ 품으로」, 『조선일보』, 2016.11.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3/2016112300197.html.

신필식, 「권리의 언어 사이로 빠져나간 정체성, 애도 그리고 아이들」,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토론문, 2021.4.24.

전홍기혜, 「나는 1억 원짜리 ‘서류 고아’였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 ①」, 『프레스시안』, 2017.10.3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3847?no=173847#0DKU>.

_____, 「‘장관 입양인 영광… 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 ②」, 『프레스시안』, 2017.1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4302#0DKU>.

「카라 보스 “엄마 찾는 아이에 문 닫은 韓, 내 마음도 닫는다”」, 『동아일보』, 2020.7.1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716/102005618/1>.

“Adoptee Kara Bos’s search for her roots in South Korea,” BBC News, 2020.7.16,

<https://www.youtube.com/watch?v=Dv5Q6N3lvRQ>.

Deann Borshay Liem, *First Personal Plural*, Center for Independent

Documentary, 2000.

Deann Borshay Liem,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New Day Films, 2010.

Abstract

The Right to Preserve One's Identity and the Right to Mourn

: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in Eunkyung

This essay examin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in ligh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rgues that international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adopted child's "right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as articulated in Articles 7 and 8 of the UNCRC) as well as the child's right to mourn the loss of that identity. The UNCRC is an important document not only because it identifies the state as bea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well-being of the child but also because it recognizes that the identity of the child needs special protection. Article 7 of the UNCRC defines "identity" as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The life histories of Deann Borshay Liem, Adam Crapser, and Kara Bos exemplify the loss of identity involved in international adoption. Instancing their cases as specific examples of the loss of name, nationality, and family relations, the essay argues that, despite the legal advances enabled by the UNCRC (1989) as well as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1993), Korean-born adoptees continue to suffer from the traumatic loss of identity. Further, it argues the need to acknowledge their loss by recognizing their right to mourn their original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 Recognizing the vulnerability of the child as including the vulnerability of his or her identity enables us to connect it to the vulnerability of the unmarried birth mothers who, like the children they are giving away, are unable to claim their social identities and a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mourn their losses.

Key words: International Adoption, Kore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24, 195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1993), child, right, identity, name, nationality, family, vulnerability, mourning, unwed birth mothers, gender, justice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